

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(제42조의13 관련)

1. 중계전문기관의 금지행위

- 가.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
- 나.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
- 다.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
- 라. 제42조의12제7항에 따라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
- 마.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의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
- 바.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중계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중계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 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
- 사. 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정보전송자, 일반전문기관,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 수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
- 아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2. 일반전문기관의 금지행위

- 가.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- 나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
- 다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
- 라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

- 마.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
- 바.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·철회하지 않는 행위
- 사.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
- 아.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
- 자.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
- 차.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·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카.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
- 타.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- 파.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·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
- 하.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3. 특수전문기관의 금지행위

- 가. 제2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행위
- 나.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
- 다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,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
- 라.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·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
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